환경부 공고 제2009-16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년 4월 27일 / 환 경 부 장 관

1. 제안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기간을 연장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변경신고 신청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 수입신고 등의 신청기한 변경(안 제16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5항)

(1)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관찰물질 수입신고 및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등의 변경신고·허가 시기가 상이하여 국민 및 산업계의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았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변경신고 등의 기간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

(3) 변경신고 등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안 제47조 및 별표9)

(1)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적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기준이 달라 법적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집행의 경직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신축적·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더라고 각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함.

(3) 행정처분의 경감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국민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환경부 공고 제2009-146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년 4월 9일 /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난분해성 화학물질 사용 및 자연적인 유기물질 생성 증가 등으로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을 하천 환경기준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환경정책 목표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 가목(2))

(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기물질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2) 정수처리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자연적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함.

(3)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환경부공고 제2009-14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 4월 8일 /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을 폐기물의 발생억제, 발생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적 이용을 통해 환경보전은 물론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으로 보완(안 제1조)

나. '처분'은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으로, '재활용'은 '물질적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는 등 '폐기물', '처리' 등의 개념 등을 재정비(안 제2조)

다. 발생억제, 사전예방, 친환경적 처리, 원인자책임, 국내처리, 물질적 재활용 우선의 원칙 등 6대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설정(안 제3조의2)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에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300kg/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감량의무 대상 명확화(안 제15조의2)

마. 종전에 허가제인 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과 신고제인 재활용신고자를 허가제인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여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영업 역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 중 재활용업에 포함(안 제25조제1항제5호)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 중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나 가축먹이로 사용하거나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을 파쇄하여 제초, 퇴비 또는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 중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 등 기준을 설정하여 인증 받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제품이 제조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함(안 제28조의5, 안 제28조의6)

아.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 순위를 방치행위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자, 사업장 승계자로 하며,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함(안 제40조부터 제40조의6까지)

자.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을 사후관리대행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